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6. 3 선고 2020가단125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113452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6. 3 선고 2020가단12571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발 담당변호사 명을식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주식회사 G

피고 1, 5,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피고 C,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4. 12. 30.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014. 12. 30.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D,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피고 D,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 피고 D,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G은 피고 C,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과 피고 E 사이에 논산시 H 답 315㎡, I 답 8㎡, J 답 2㎡, K 답 21㎡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2. 15.자 매매계약, 논산시 L 답 42㎡에 관하여 체결된 2018. 4. 11.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F은 피고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12. 18. 접수 제35535호, 같은 법원 2018. 4. 12. 접수 제10883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 M 주식회사(2019. 12. 3. 해산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하 해산전후를 불문하고 ‘M’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M로부터 논산시 H 토지(위 토지로부터 K, I, N, J 토지가

분할되었는바, 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각 필지의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H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한다)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철근,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급을 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M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피고 B의 사위이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24.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카합84)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일하던 피고 C은 2015. 2. 14. 원고에게 90,720,000원을 2015. 4.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2016.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P), 피고 E은 2017. 6. 2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 E은 2017. 11. 9.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피고 회사에서 피고 E로 변경하였다.

사. 피고 E은 피고 F에게, 2017. 12. 18. 이 사건 토지 중 L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17. 12. 15. 매매(이하 ‘이 사건 2017. 12. 15.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4. 12. L 토지에 관하여 2018. 4. 11. 매매(이하 ‘이 사건 2018. 4. 11. 매매’라 하고, 이 사건 2017. 12. 15. 매매와 이 사건 2018. 4. 11. 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F은 2018. 7.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1) 피고들은 통정, 통모하여 허위로 M이 시공사이고, 피고 회사가 시행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원고에게 공사를 시켰는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들 상호 통정, 통모하여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사대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이 사건 각 매매는 주위적으로 피고 E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E와 피고 F이 악의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F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F, 회사

- 1)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인은 M일 뿐이고, 피고 B, F,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
-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 E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 E은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F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다. 피고 D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인은 피고 D이 아닌 M이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피고 B, F,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원고와 M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F,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

1) 피보전권리의 유무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은 2018. 2. 16.

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이 사건 2017. 12. 15. 매매는 피고 E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기 전에 이미 체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2017. 12. 15. 매매에 관한 위 주장은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이 사건 2018. 4. 11. 매매에 관하여 본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2018. 4. 11. 매매 당시 논산시 R, S 내지 T, U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E이 2018.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무 90,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2018. 4. 11. 매매 당시 원고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2018. 4. 11. 매매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018. 4. 11. 매매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정허위표시 주장

원고는 통정허위표시 역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이는 무효일 뿐이고,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원고와 M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D, F,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덕